(國)(外)(事)(件)

共同考案者의 實質的 限界

<日本東京地法 1981年 3月 30日 判決, 1978年 (ワ) 6942號>

1. 原 告 : A
2. 被 告 : B
3. 判 決

本件考案은 共同考案으로는 認定할 수 없다.

B는 A에게 1,177,168円과 이에 대한 1977年 12月 1日부터 完拂될 때까지 年 5分에 該當하는 金額을 支拂하라.

4. 事件槪要

A와 B 사이에는 1966年 9月에 A는 몇차례에 걸쳐 被告會社에서 訴外 C와 面談한 바 있다. 이러한 면담을 통하여 A는 C에게 表面形狀에 變化를 가져오는 合成樹脂板을 電柱 등에 말어부치면 貼紙防止의 效果를 가져올 수 있는가의 問題意識이 있음을 말하고 이 문제의 解明에 대하여 B의 協力을 要求하였다.

C는 擔當任員에 報告하고 그 任員은 B社研究主任에게 研究着手를 命令하는 한편 B社 製品인 파포론의 製品過程中 半製品이 그 目的에 必要한 것으로 認知함으로써 貼紙剝離性如何를 檢討하였다.

그 結果를 A에게 連絡하고 A는 이의 試驗結果에 洽足해 하였다.

A와 B는 1966年 10月下旬頃 B가 製造하고 A가 販賣하되 B도 協力하기로 約定되어 있다. 그러나 1967年 5月 12日 A는 單獨出願함으로써 A와 B의 從業員과의 共同考案與否가 問題되었다.

이에 대해 A는 B의 主張을 否定하고 B의 주장인 파포론半製品은 缺點이 있어 採用하지 않았다는 事實과 A의 單獨出願을 B會社의 C도 알고 있었을 뿐아니라 A의 本考案의 實施品完成과 B가 주장하는 제품은 相異하다고 反論하였다.

5. 判決要旨

A는 1965年 2月頃 自己의 去來處인 東京電力으로부터 電柱 등의 貼紙防止問題研究가 提示되어 A는 1966年 9月頃 C와 面談하고 B의 협력을 청하였다. C는 A의 청을 B會社에 전하고 지붕布裝천을 利用하는 연구를 指示하였다.

B會社從業員은 實驗結果 그 때까지 B가 製造販賣하고 있던 파포론의 반제품이 지붕포장천보다 效果가 있다고 提案하였다. 이때 A에게도 전해졌다.

A는 이 파포론半製品으로써 실험한 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B는 A의 本件 製品開發에 전혀 關與하고 있지 않다는 것, A와 B는 면담이 없었다는 것, A의 出願에 B는 아무런 異議를 申請하지 않았다는 것, A가 B에게 A의 본건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技術指導를 하였다는 것 등으로 미루어 共同考案 즉 고안이 공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2人以上의 사람이 고안의 創作에 實質的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고안을 완성하였다고 解釋하게끔 單純한 협력을 한 것에 不過할 때에는 그 사람은 共同考案者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B가 했다고 한다면 上職者의 지시를 받아 B가 제조판매하고 있던 지붕포장천에 貼紙를 하여 그 剝取效果를 調査하는 실험을 한 것, B가 제조판매하고 있던 商品名인 파포론이란 제품쪽이 이 지붕포장천보다 突起가 많고 貼紙에 대하여 接着하는 面積이 적으므로 보다 剝取效果가 있지 않은가 하여 효과를 조사하는 실험을 하였음을 下職者가 上職者에 보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A가 B로 하여금 파포론의 반제품을 실험으로 電柱에 붙여 貼紙防止效果의 有無를 조사한 사실을 參酌해도 A의 의뢰에 의해 B의 종업원이 A를 考案者로 하는 본건 고안의 완성에 助力하였음을 認定할 수 있다 해도 그것으로서 곧 본건 고안이 A와 B종업원과의 實質的인 협력에 의해 공동으로 완성한 것, 즉 A와 B종업원과의 공동고안이라고는 斷定할 수 없으며 以外에는 본건고안이 A와 B종업원과의 공동고안으로 斷定할 만한 證據는 없다. B종업원의 助力이 있었음은 否定할 수 없으나 본건고안의 창작은 A가 단독으로 한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6. 解 說

本件과 같이 協力이나 助言만으로는 具體化를 위해 협력하였다는 實質性이 缺如되므로 共同考案者로 볼 수 없어 本判決이 妥當하다는 衆論이다.